

법률사무소 A&P, 공동 음반 음원 분쟁서 '저작인접권 지분' 인정

정민기 기자

입력 2025.06.24. 17:55



법률사무소 A&P 제공

법률사무소 A&P(대표변호사 박사훈)는 최근 저작권접권 관련 민사소송에서 음반 및 음원 수익에 대한 원고의 권리를 인정받는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공동 창작물 수익 분배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사건은 발레리노인 원고와 피아니스트인 피고가 공동 제작한 발레 수업용 음반의 수익금 분쟁에서 비롯됐다. 양측은 음반 제작, 배포, 수익 정산 등에 대한 구두 동업 약정을 체결하고 협업했으나, 이후 피고가 정산을 중단하며 분쟁이 발생했다. 원고는 자신이 음반 및 음원의 저작권접권자임을 주장하며 미정산 수익금의 절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는 피아노 연주와 편곡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기에 기여도가 높다고 주장하며, 음반에 한정된 수익 정산 합의였고 디지털 음원은 별도 정산 대상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양측의 수익 정산 방식, 음원 등록 비용 지출 내역, 저작권법에 따른 디지털 음원의 '음반' 포함 여부, 원고의 음반 제작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디지털 음원 역시 동업 약정의 정산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법원은 원고를 민법상 조합(동업) 관계의 일원으로 간주했다. 해지 시 잔여재산 및 수익은 정산되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는 저작인접권 지분권자로서 미정산 수익금의 절반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대법원 판례(2007다73482, 2000다53724)에 따라 본 사안은 민법상 조합(동업) 관계로 해석되며, 해지 시 잔여재산 및 수익은 정산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이로써 법원은 원고가 저작인접권의 지분권자이므로 미정산 수익금도 기존의 합의 내용을 근거로 절반 비율로 분배되어야 함을 명확히 했다.

박사훈 대표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창작물 공동 제작에서 정당한 기여와 수익 분배 기준을 명확히 한 사례"라며, "홍수진 변호사를 주축으로 당 사무소의 치밀한 대응이 좋은 결과를 이끌었으며, 앞으로도 법률사무소 A&P는 문화·예술 분야를 포함한 지적재산권 전반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법률사무소 A&P는 상가 분쟁을 비롯한 부동산 분야에서 입지를 다져왔으며, 최근에는 지적재산권과 콘텐츠 산업 분야로 업무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콘텐츠 산업 전반에 대한 법률 자문 및 분쟁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인력을 보강하고 있으며,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